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22 선고 2014가단5312201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5. 3. 25.

판결 선고2015. 4. 2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,841,913원과 그 중 47,841,498원에 대하여 2014. 10. 22.부터 2014. 11. 27.까지는 연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(다만,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취하하였다)

2. 적용법조

피고 1, 2에 대한 청구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.

판사이규홍

별지